[별지 제32호의6서식] <개정 2023. 5. 25.>

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확인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15일

신청인	제작자명		제작자등록번호	
	대표자명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번호:)		
사업장 소재지				

튜닝 작업의 시설 및 인력	[ ] 시설면적(작업장·검차장·사무실·부품창고 등을 포함한 면적을 말합니다) 평방미터(㎡) [ ] 검사시설: ① 리프트[ ] ※ 승용자동차 및 경형·소형의 승합·화물·특수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② 피트 [ ] [ ] 도장시설(직접 도장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[ ] 검사기구(제동시험기 / 정밀도검사 번호:) ※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「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별표 33에 따른 차량중량이 제원의 허용차 범위를 초과하는 튜닝 작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[ ] 기술인력(성명: 자격명: 자격증번호:) ※ 자동차정비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말하며 기술인력이 1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작성합니다.
튜닝 작업 범위	[ ] 길이·너비 및 높이 [ ] 총중량 [ ] 차체 및 차대 [ ]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※ 피견인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튜닝을 위하여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의 튜닝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[ ] 승차장치 [ ] 물품적재장치 [ ]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작업
제원관리번호	※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(1개만 기입)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

[ ]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[ ] 위와 같이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작업 변경의 확인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(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) 2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55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·인력 등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(같은 항 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 확보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) 3. 사업계획서(제55조의3에 따른 튜닝 작업의 범위만 해당합니다)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